

분기배당제도의 도입

-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·코스닥등록기업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가능
 - 정기배당은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배당
 - 중간배당은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사업연도말에 확정될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배당
 - * 중간배당제도는 9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이익이 주로 상반기에 실현되는 경우 결산주총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
- 분기배당제도는 분기별로 결산실적에 따라 1년에 최고 4 차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 - 기업의 분기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 할 수 있게 되어 저금리환경하에서 배당투자수요 확대
 - 국채·회사채와 같이 정기적으로 투자수익확보가 가능 하므로 주식의 장기보유유인도 커짐
 - 분기배당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평가가 시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배당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주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에 기여

※ 미국에서는 분기배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음
- 금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

배당소득세 비과세의 효과

□ 1년이상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비과세
(현행 3년이상 보유자 10%분리과세)

⇒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종전 세금으로 납부하던
16만 5천 원(배당소득세율 16.5%)이 비과세됨

* 예를들어 금년 3월주총에서 시가대비 30%의 배당을 한 일신방직의 경우

- 시가 1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3천만원의 배당을 받아 49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1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됨

□ 금년 12월 결산법인 479개사중 **301개사(62.8%)가 배당을 하였으며 배당수익률(배당액/時價)은 세후기준 4.3%수준임**

⇒ 1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비과세로 수익률이 0.9%p가 상승하여 시가대비 5.2%의 배당을 받게 됨

- 국공채(세후 5.67%), 은행정기예금금리(세후 4.95%)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주식투자유인이 크게 높아짐

* 배당수익률 상위 10개사

- ①일신방직(30%), ②현대시멘트(18.5%), ③신풍제지(18.4%),
④동원수산(16.1%), ⑤현대 DSF(15.6%), ⑥중앙건설(15.3%),
⑦현대미포조선(15.0%), ⑧한진해운(13.5%), ⑨LG상사(12.8%),
⑩SK가스(12.8%)

* 배당수익률 분포 현황

3% 미만	3%~6%미만	6%~9%미만	9% 이상
86개	105개	68개	42개